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한-미 FTA 순원가법의 분석과 한국
자동차 기업의 활용방안 연구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김 관 우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한-미 FTA 순원가법의 분석과 한국
자동차 기업의 활용방안 연구

지도교수 조 찬 혁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김 관 우

김관우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2월



주 심 경영학박사 윤 광 운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최 순 권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조 찬 혁 (인)

《논 문 요 지》

본 연구는 2013년 관세청에서 미국 자동차기업에 대하여 실시한 원산지검 증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미 FTA의 순원가법을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우리 자동차기업에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제법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그 속성을 파악하였다. 순원가법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문의 규정만을 근거로 산정방법과 실무적 접근방법을 고찰한 결과 우리 기업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보유출의 위험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우리 정부 협상단 및 자동차기업들은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순원가법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2013년 미국 자동차기업에 대한 관세청 검정결과(필자참여), 상기 우려와는 달리 순원가법이 실무적으로 간단하고, 정보유출의 우려도 적으며, 객관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공제법보다 효율적이어서 미국 자동차기업이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원가구조를 고려하여 가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순원가법이 공제법보다 유리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고 분석된 내용은 우리 자동차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데 보다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목 차 >

표 목차	ii
ABSTRACT	iv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2 장 부가가치기준 및 순원가법의 이론적 고찰	3
제 1 절 FTA 원산지기준	3
제 2 절 부가가치기준 분석	5
제 3 절 순원가법의 이론적 고찰	10
제 4 절 순원가법의 실무적 고찰	12
제 3 장 순원가법 원산지검증사례 분석	15
제 1 절 캐나다 원산지검증 교재 분석	15
제 2 절 B세관의 미국 A社 검증 사례 분석	37
제 3 절 미국 관계자 인터뷰 내용	43
제 4 장 순원가법 효용성 분석 및 우리나라 자동차기업 활용방안 연구 ..	46
제 1 절 순원가법의 단순함과 적용 용이성	46
제 2 절 순원가법과 공제법과의 부가가치율 비교 분석	48
제 3 절 순원가법의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53
제 5 장 결론	54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54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55

< 표 목 차 >

<표1> 공제법(Build-Down) 산식	5
<표2> 수입량환산법(MC) 산식	5
<표3> 순원가법(Net Cost) 산식	6
<표4> 집적법(Build-Up) 산식	6
<표5> 제품가격의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율 변동 추이	7
<표6> 비원산지재료비의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율 변동 추이	8
<표7> 부가가치기준 판정 사례1	8
<표8> 부가가치기준 판정 사례2	9
<표9> 부가가치기준 판정 사례2	10
<표10> 순원가 정의	15
<표11> 순원가 산정방법	16
<표12> 총비용 정의	18
<표13> 비허용 이자 정의	20
<표14> 제품 거래가격	22
<표15> 거래가격 재료가치	23
<표16> 거래가격 요약	24
<표17> 순원가 재료가치	26
<표18> 순원가	27
<표19> 순원가 요약	28
<표20> 제조원가 내역	30
<표21> 검증사례 재료내역	31
<표22> 검증사례 순원가	33

<표23> 검증사례 순원가 부가가치율 산정	35
<표24> 미국A社 순원가 산정내역	39
<표25> 판매가격의 구성 및 순원가	40
<표26> 상품의 순원가 정의	47
<표27> 부가가치기준 허용치 계산	50
<표28> 부가가치기준 허용 구간 비교	51
<표29> A社의 비원산지재료비 허용치 계산	52
<표30>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순원가(매출원가/매출액) 추정 비율 ·	52



<ABSTRACT>

An Analysis of Net Cost Method 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It's Application Scheme to the Korea Auto Industries

Kwan-Woo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Korea car companies with the information acquired in the course of origin verification on the US carmaker conducted by Korea Customs Service.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value contents rules based on the Rules in Korea-US FTA by analyzing the Build-Down method which is most commonly used in practice. The examination suggests that it is quite difficult for the Korea carmakers to use the net cost method because of the excessive workloads and the concerns of information leakage. During the FTA negotiation, Korea delegations and carmakers opposed to adoption of the net cost method on the ground of these worries. B Customs conducted FTA origin verification on the cars exported by the USA carmaker which used net cost method in 2013 and by that chance we came to know that the net cost method is quite simpler and the range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limited then we expected. We found out that net cost method is objective and reliable and is commonly used by US carmakers. In addition, the empirical comparison of regional value contents rates between build-down method and net cost method considering the cost structure of Korea carmakers reveals that

net cost method is more efficient than build-down metho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better utilization of Korea-US FTA by the Korea carmakers.

Key words: Korea-US FTA, Regional Value Contents Rules, Net Cost Method, Car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에는 한 건의 FTA로 체결하지 못하였지만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부터 2012년 한-미 FTA까지 아세안, EU, 미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 FTA를 성사시키며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FTA 협정문이 우리나라 법체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중 원산지규정은 이전에는 접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미진했다. FTA 목적달성의 필수 과정인 원산지규정의 준수는 수출입 업체에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했고, 이를 위해 정부 및 무역단체들은 총력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다. FTA 체결 후 각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본격화 되면서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원산지규정 중에서 실질적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은 우리나라에는 가장 생소한 개념이며, 특히 부가가치기준은 제조원가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 및 기업 모두 더욱 어려워하는 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한-미 FTA에서 최초로 소개된 순원가법은 부가가치기준의 한 종류로서 기존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가장 복잡한 산정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순원가법은 NAFTA에서 도입되어 미국에서는 일반화된 방법으로 그 적용이 자동차제품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순원가법은 기존 부가가치기준보다 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하고, 까다로우며 그마저도 한-미 FTA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선택규정 등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큰 관심을 모으지 못하였고, 그 내용에 대하여는 한-미 FTA 협정문 규정을 바탕으로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3년 B세관 및 관세청 산하 여러 세관에서 미국 자동차 기업에 대

한 전방위적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하는 순원가법 산정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원산지검증으로 순원가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뿐 아니라 정부 및 학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FTA 원산지규정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심도 깊게 분석하는 한편 미국 자동차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획득한 순원가법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우리 기업, 특히 자동차기업에게 순원가법의 시사점 및 활용방안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FTA 및 관세분야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이 논문의 연구의 목적과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현재 부가가치기준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제법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기준의 성질 및 특성을 파악하고, 한-미 FTA 협정문만을 근거로 이론적으로 순원가법의 적용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 및 자동차기업이 인식하고 있었던 순원가법의 적용방법, 현실에서의 한계점 및 그 밖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제3장에서는 캐나다세관의 원산지검증 교재에서 소개된 순원가법의 적용방법과 함께 2013년에 우리나라 B세관이 미국 자동차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 자동차기업의 순원가법 적용방법을 확인해 보고, 미국 현지 원산지검증과정에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제2장에서 이론적으로 이해하였던 순원가법의 적용방법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분석해 보겠다. 제4장에서는 미국 자동차기업이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전제로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이 순원가법을 사용하였을 때의 효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과 함께 연구의 한계 및 방향을 제시하며 이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제2장 부가가치기준 및 순원가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FTA 원산지기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 우리말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해석된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장벽을 제거하여 체결국끼리만 혜택을 부여하는 협정이다. 최근 자유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하에서 시작된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지지부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합의점을 찾기 쉬운 FTA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FTA 초기에는 주로 상품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분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결국가간 기준에 존재했던 관세를 철폐하여 교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며, 이는 양허와 원산지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양허는 FTA 협상으로 인한 결실로 관세철폐를 의미하며, 원산지는 그 관세철폐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FTA가 발효되면 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며, 그 특혜는 당연히 FTA를 체결한 체결국산 제품에만 주어진다. 즉 원산지가 체결국산이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FTA활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원산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원산지는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성격이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세계화의 흐름속에 분업화된 제조업의 속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논쟁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원산지기준이다. 수많은 무역협상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원산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각 FTA 협상에서는 무역거래 대상인 모든 재

화에 대하여 지금껏 고안된 기준들을 이용하여 개별적인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재화의 분류는 기존 국제무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HS코드(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 이하 ‘HS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그 수는 5,200개에 달한다. 즉 지구상의 재화를 5,200여개로 분류하여, 그렇게 분류된 재화에 대하여 관세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즉 원산지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원산지기준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과 같이 최초 획득 후 추가가공이 필요 없이, 100% 그 나라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 부류(완전생산기준)와 구매한 원재료 또는 부품을 가지고 공장에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부류(실질적 변형기준)가 그것이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다시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 첫째, ‘제품의 형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다. 원재료가 완제품이 되기까지 공장에서 제조과정을 통해 형태가 얼마나 변했는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콩과 된장, 철광석과 철판, 과일과 과일주스 등의 관계와 같이 투입재료와 산출된 제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다. 실무적으로는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가 상이한지 여부로 판단하며 이를 세번변경기준이라고 한다. 둘째, ‘역내에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나.’ 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기준이라 불린다. 대부분 제품가격 중에 수입산 부품의 가격이 일정비율 이하여야 한다는 원리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제품가격 중 계약국의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셋째, ‘재단 및 봉제가 되어야 한다.’, ‘이성체 분리가 되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특정 공정을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이를 특수공정기준(가공공정기준)이라고 하며, 위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병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제2절 부가가치기준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기준은 제품가격 중에서 채약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 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겠다는 기준으로, 그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제품가격에서 비역내산 재료 즉 수입산 재료의 가격을 차감한 가격의 비율을 그 나라의 부가가치로 보는 방법과 제품가격 중에서 역내산 재료 즉 원산지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그 나라의 부가가치로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에는 공제법(Build-Down), 수입량환산법(MC, Import Contents : 이하 MC법), 순원가법(Net Cost)이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집적법(Build-Up)이 있으며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표1〉 공제법(Build-Down) 산식

$$\text{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제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제품가격}} \times 100 > \text{〇〇}\%$$

〈표2〉 수입량환산법(MC) 산식

$$\text{부가가치 비율}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제품가격}} \times 100 < \text{〇〇}\%$$

〈표3〉 순원가법(Net Cost) 산식

$$\text{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순원가}} \times 100 > \text{〇〇\%}$$

〈표4〉 집적법(Build-Up) 산식

$$\text{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원산지재료비}}{\text{제품가격}} \times 100 > \text{〇〇\%}$$

공제법과 순원가법의 산식은 그 구조가 같으며, 두 방법 모두 산정된 값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충족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MC법은 일정비율 이하여야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앞의 것은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차감한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나라의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s) 비율이고, 이것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MC법은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의 가격이 일정비율 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비원산지재료비는 공제법 및 순원가법의 차감항목이다. 다시 말해 공제법은 차감후의 비율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이고, MC법은 공제법의 차감항목인 비원산지재료비의 비율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두 방법은 결국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집적법은 분자의 자리에 비원산지재료비 대신 원산지재료비가 있는데, 이는 제품가격에서 원산지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부가가치비율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노무비, 제조간접비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

비(이하 ‘관관비’)와 이윤은 제외하고 순수한 재료비 중에서 역내산 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견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세 방법과의 결정적인 차이로서는 집적법은 제품가격이 작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이며, MC법, 공제법, 순원가법은 제품가격이 커질수록 유리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공제법은 MC법 및 순원가법과 그 원리가 같으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므로, 공제법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기준의 성질을 설명하겠다. 아래 <표5> 공제법 산식을 살펴보면 분모인 제품가격의 크기가 변동된다면 부가가치비율 즉 결과값도 변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품가격이 커지면 부가가치 비율도 높아져 원산지판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반대로 제품가격이 작아지면 부가가치비율이 낮아져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표5> 제품가격의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율 변동 추이

$$\text{부가가치 비율} \textcircled{2}\uparrow = \frac{\text{제품가격} \textcircled{1}\uparrow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제품가격} \textcircled{1}\uparrow} \times 10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에서는 자동차 제품(HS 8701~8706)에 대하여 공제법을 적용할 때는 부가가치 55% 이상을 요구하지만, 순원가법의 경우에는 35% 이상을 요구하여 공제법보다 순원가법에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후 설명하겠지만, 순원가가 제품가격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유리한 비율을 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표6>에서 산식을 살펴보면 비원산지 재료비가 변동됨에 따라 부가가치비율도 변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원산지재료비가 작아지면 부

가가치비율이 높아져 원산지판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반대로 비원산지재료비가 커지면 부가가치비율이 낮아져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표6〉 비원산지재료비의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율 변동 추이

$$\text{부가가치 비율}(\textcircled{2}\uparrow) = \frac{\text{제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circled{1}\downarrow)}{\text{제품가격}} \times 100$$

위 내용은 예시를 통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격이 1,000원인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 판정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다. 그 제품의 재료비는 700원이며, 재료비 중 600원은 비원산지재료비이고 100원은 원산지재료비이다. 그리고 판관비는 200원이고 이윤은 100원이다. 이 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부가가치기준으로서 공제법 50% 이상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원산지를 판정해 보면 아래 <표7>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40%로 원산지기준인 50%보다 낮아 충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7〉 부가가치기준 판정 사례1

- 제품가격 : 1,000원
- 원산지재료비 : 100원
- 비원산지재료비 : 600원
- 판관비 : 200원
- 이윤 : 100원
- 원산지 기준 :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50%

$$\text{부가가치 비율} = \frac{1,000 - 600}{1,000} = 40 \% \quad (\text{불충족})$$

그렇다면 이 경우에 대하여 공제법상 부가가치율의 결정요소인 제품가격과 비원산지재료비에 대하여 그 값을 변형시킨 후에 결과값인 부가가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우선 첫 번째로 제품가격을 변동시켜 보도록 하겠다. 재료비, 관관비는 그대로이고 이윤은 100원에서 600원으로 과대계상하고 제품가격도 그에 따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과대계상 하여 부가가치율을 계산해 보면 아래 <표8>과 같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모값인 제품가격이 커질수록 부가가치율에도 유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관세당국은 어떠한 관점에서 제품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접근할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제품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실제보다 부당하게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세관당국은 주로 제품가격이 실제보다 과소계상되어 관세가 탈루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나, FTA로 인하여 세관당국은 동일한 제품가격에 대하여 이중적인 관점으로 제품가격을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표8> 부가가치기준 판정 사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가격 : 1,500원(500원 과대계상) ○ 원산지재료비 : 100원 ○ 비원산지재료비 : 600원 ○ 관관비 : 200 ○ 이윤 : 600원(500원 과대계상) ○ 원산지 기준 :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5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 $\text{부가가치 비율} = \frac{1,500 - 600}{1,500} = 60\% \quad (\text{충족})$ </div>
--

그렇다면 두 번째로 비원산지재료비를 변동시켜 보도록 하겠다. 비원산지재

료비를 600원에서 300원으로 과소계상하고 차액 300원은 확인이 어려운 판관비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율을 계산해 보면 아래 <표9>와 같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9> 부가가치기준 판정 사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가격 : 1,000원 ○ 원산지재료비 : 100원 ○ 비원산지재료비 : 300원(300원 과소계상) ○ 판관비 : 500(300원 과대계상) ○ 이윤 : 100원 ○ 원산지 기준 :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50%
$\text{부가가치 비율} = \frac{1,000 - 300}{1,000} = 70\% \quad (\text{충족})$

분자값인 비원산지재료비가 작아질수록 부가가치율에도 유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관세당국은 어떠한 관점에서 제품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접근할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세관당국은 비원산지재료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실제보다 부당하게 축소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제품가격 및 비원산지재료비와 부가가치비율과의 상관관계는 이후 순원가법의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될 부분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절 순원가법의 이론적 고찰

우선 한-미 FTA 협정문 규정에 따라 순원가법을 분석해 보겠다. 지금까지 정부 및 각종 무역단체에서도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순원가

법과 관련된 내용을 전파하고 홍보하여 왔다. 앞서 <표3>에서 보았듯이 순원가법의 산식은 공제법 산식의 구조와 동일하며, 단지 제품가격 대신 순원가가 쓰였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미 FTA에서 제품가격은 조정가격(AV : Adjusted Value)으로 불리며, 이는 선측인도가격(FOB)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에서 순원가라 함은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마케팅·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이하 공제비용이라고 한다)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총비용이라 함은 상품에 대한 모든 제품비용, 기간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판매가격에서 이윤을 제외한 가격이라고 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순원가라 함은 제품거래가격에서 이윤 및 판촉·마케팅·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

제품가격은 공제법, MC법, 집적법에서는 수출입거래시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산정가격을 사용하지만 수출입거래시의 거래가격과 협정에서 규정한 산정가격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거래가격과 산정가격을 비교하여 필요하다면 이를 재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로 공장도가격(EXW)으로 거래했는데 협정에서는 선측인도가격(FOB)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실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국내 운임 등을 가산하여 FOB가격으로 재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운송에 관련된 물류비용을 가지고 협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재산정하면, 제품의 가격을 어렵지 않게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순원가법은 제품가격에서 이윤이 제외된 총비용이라는 개념에서 산정을 시작하므로 그 방법은 위의 방법과는 다르다. 우선 총비용을 산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품가격에서 이윤을 차감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제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윤을 산정해 놓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므로 기업에서 발생한 총이윤에서 그 당해 제품에 대한 이윤만을 산정하는, 합

1) 한-미 FTA 협정문 제6.22조 정의 조정가격(adjusted value), 순원가(net cost), 총비용(total cost) 참고.

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산정된 총비용에서 다시 공제비용인 판촉·마케팅·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하면 순원가가 산정된다. 공제비용들의 속성을 살펴보면 제조원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들로 판관비에 속하는 비용들임을 알 수 있고, 공제비용이 차감 되는 부분도 판관비로 주로 국한됨을 알 수 있다.

제4절 순원가법의 실무적 고찰

원산지판정은 개별 제품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번변경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의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투입되는 원재료, 원재료의 HS와 원산지, 가공공정 등을 개별 제품별로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기준 중 순원가법을 제외한 공제법, 집적법, MC법의 경우에도 위 내용에 추가하여 제품의 관세가격과 원재료 가격만 추가된다면(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원산지를 판정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순원가법은 위의 경우와 양상이 다르다. 순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비용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제품의 판매가격에 포함된 이윤을 개별적으로 식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총비용이 확인되면 판촉, 마케팅, 판매후 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 비용들도 개별 제품별로 식별한 후 총 비용에서 차감해야한다. 즉 순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공제비용들을 기업에서 발생한 전체 금액이 아닌 기업이 생산하는 개별 제품별로 산정해야만 하는 고충에 직면하게 된다.

공제비용을 파악하는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협정에서는 공제비용을 판촉·마케팅·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을 모두 확인하여 공제비용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영업비에

해당하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총계정원장 내역을 개별 원장별로 모두 검토하여 공제비용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협정에서는 이러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수도세, 전기료, 건물임대료 등 모든 부문에 부과되는 공통비용의 경우는 이를 공제비용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할당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결과적으로 검증을 실시하는 관세당국의 입장에서 순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판매비의 모든 비용을 확인하여야, 누락된 공제비용이 없는지, 순원가의 산정이 적정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순원가법을 사용한 기업은 원산지검증을 받게되면 그 기업의 이윤 및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모든 내역을 상대국 관세당국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협정에서는 비밀보장 조항이 있긴 하지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이를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 FTA 규정만을 근거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업이 순원가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제품에 이윤 및 공제비용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며, 계약 상대국 관세당국에 이윤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모두 노출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협상당시에도 우리 정부와 자동차기업은 순원가법의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였고, 자동차 제품(HS 8701-8706)에 대해서는 순원가법만을 사용하자는 미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결과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법은 55% 이상, 집적법과 순원가법은 이보다 완화된 35% 이상의 부가가치가 되도록 결정되었다.²⁾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원가가 제품가격보다 작아 계산결과 부가가치율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순원가법 기준을 공제법의 것보다 20%나 낮게 책정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순원가법이 일반화된 미국 자동차기업에 상당히 유리하게 결정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이후에 자세히

2) 한-미 FTA 협상 당시 관세청 원산지분과 참가 직원과의 인터뷰로 확인된 내용임.

설명하겠다. 순원가법이 부가가치율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고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순원가법을 적용하는 우리 자동차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³⁾, 이는 방대한 작업량과 정보유출 우려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2013년 B세관에서 순원가법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기업 A社에 대하여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순원가법에 대한 우리 자동차기업의 이러한 우려를 대부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순원가법의 유용성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에 대하여 소개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3) 기아, 르노는 FTA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기업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확인한 내용임.

제3장 순원가법 원산지검증사례 분석

제1절 캐나다 원산지검증 교재 분석

1. 한-미 FTA와 NAFTA 순원가 규정 비교

2010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캐나다 전문가가 우리나라 관세청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FTA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사는 전직 캐나다 세관 직원으로 재직시 FTA 원산지검증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직 후에는 회계법인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교육 내용 중에 NAFTA의 순원가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소개에 앞서 NAFTA 사례를 한-미 FTA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 FTA와 NAFTA의 순원가법 규정을 비교하여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바, 한-미 FTA 영문 협정문과 NAFTA 협정문에서의 순원가법 관련 규정을 각각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가. 순원가의 정의

〈표10〉 순원가 정의

한-미 FTA	NAFTA
Article 6.22: Definitions	Article 415: Definitions
net cost means total cost minus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and non-allowable interest	net cost means total cost minus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and non-allowable interest

costs that are included in the total cost	costs that are included in the total cost;
---	--

순원가의 정의 부분은 한-미 FTA 협정문과 NAFTA 협정문이 완전히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용어는 완전히 같아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산정 방법과 여기 등장하는 용어의 정의도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나. 순원가의 산정방법

〈표11〉 순원가 산정방법

한-미 FTA	NAFTA
Article 6.22: Definitions	Article 415: Definitions
net cost of the good means the net cost that can be reasonably allocated to the good under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a) calculating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all goods produced by that producer, subtracting any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and non-allowable interest costs that are included in the total cost of all such goods, and then	For purposes of calculating the net cost of a good under paragraph 3, the producer of the good may: (a) calculate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all goods produced by that producer, subtract any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and non-allowable interest costs that are included in the total cost of all such

<p>reasonably allocating the resulting net cost of those goods to the good;</p>	<p>goods, and then reasonably allocate the resulting net cost of those goods to the good,</p>
<p>(b) calculating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all goods produced by that producer, reasonably allocating the total cost to the good, and then subtracting any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and non-allowable interest costs that are included in the portion of the total cost allocated to the good; or</p>	<p>(b) calculate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all goods produced by that producer, reasonably allocate the total cost to the good, and then subtract any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and non-allowable interest costs that are included in the portion of the total cost allocated to the good, or</p>
<p>(c) reasonably allocating each cost that forms part of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the good so that the aggregate of these costs does not include any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and non-allowable interest</p>	<p>(c) reasonably allocate each cost that forms part of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the good so that the aggregate of these costs does not include any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and non-allowable interest</p>

costs, provided that the allocation of all such costs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reasonable allocation of costs set out i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costs, provided that the allocation of all such costs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reasonable allocation of costs set out in the Uniform Regulations, established under Article 511 (Customs Procedures - Uniform Regulations)
--	---

여기서는 순원가의 산정방법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a)와 (b)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c)의 경우에도 원가요소를 배분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미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규칙(GAAP)을 NAFTA에서는 통일규칙(Uniform Regulations)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차이일 뿐 동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한-미 FTA에는 통일규칙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가요소를 배분하는 방법을 각 당사국에서 이용하는 회계규정에 적합하기만 하면 인정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총비용의 정의

〈표12〉 총비용 정의

한-미 FTA	NAFTA
Article 6.22: Definitions	Article 415: Definitions
total cost means all product costs, period costs, and other costs for a good incurr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total cost means all product costs, period costs and other costs incurr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p>Parties. Product costs are cost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a good and include the value of materials, direct labor costs, and direct overhead. Period costs are costs, other than product costs, that are expensed in the period in which they are incurred, such as selling expenses and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Other costs are all costs recorded on the books of the producer that are not product costs or period costs, such as interest. Total cost does not include profits that are earned by the producer,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retained by the producer or paid out to other persons as dividends, or taxes paid on those profits, including capital gains taxes;</p>	<p>more of the Parties;</p>
---	-----------------------------

앞 부분의 총비용의 용어 정의는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미 FTA에서는 총비용을 구성하는 세 가지 비용(all product costs,

period costs, other costs)의 부연 설명이 추가되었으며 총비용에는 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추가 되었다. 이 내용은 제조원가, 판매비 및 이윤으로 구성되는 원가구조에서 상식적인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부분도 두 협정의 내용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비허용 이자 정의

〈표13〉 비허용 이자 정의

한-미 FTA	NAFTA
Article 6.22: Definitions	Article 415: Definitions
non-allowable interest costs means interest costs incurred by a producer that exceed 700 basis points above the yield on debt obligations of comparable maturities issued by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of the Party in which the producer is located	non-allowable interest costs means interest costs incurred by a producer that exceed 700 basis points above the applicable federal government interest rate identified in the Uniform Regulations for comparable maturities;

비허용이자의 정의에서도 앞부분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있어서 한-미 FTA에서는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채무증권 수익률보다 700 기준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하고 있으며, NAFTA에서는 통일규칙에 제시된 연방정부의 이자율보다 700 기준 포인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통일규칙(Uniform Regulations)이 있는 NAFTA방식과의 차이점으로 인한 것이고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미 FTA 와 NAFTA의 순원가법 관련 규정에 대하여 비교 및 검토한 것을 종합해 보면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두 협정문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4년 발효한 NAFTA와 2012년 발효한 한-미 FTA간에는 18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순원가법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NAFTA의 순원가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펴볼 캐나다 세관 NAFTA 원산지검증 질문서 및 검증사례는 한-미 FTA의 순원가법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직접 원산지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NAFTA에서 캐나다 세관은 20년간 미국 및 멕시코 기업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 그 내용 자체가 미국 기업의 기법도 상당부분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캐나다 원산지검증 질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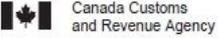
캐나다 세관에서는 원산지기준별로 각각 상이한 NAFTA 원산지검증 질문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거래가격), 부가가치기준(순원가), 완전역내생산기준으로 총 다섯 가지가 있다. 따라서 검증을 받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적용한 원산지기준에 따라 질문서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 질문서는 거래가격과 순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비교하여 순원가법의 특성을 알아 보겠다.

가. 거래가격에 의한 부가가치기준 질문서

우선 거래가격에 의한 부가가치기준 질문서를 각 페이지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③ 요약 (Value of Materials)

〈표16〉 거래가격 요약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Agence des douanes et du revenu du Canada		(SECTION A) PROTECTED (when completed)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REGIONAL VALUE CONTENT — TRANSACTION VALUE METHOD SUMMARY			
Name of Producer		Telephone No. ()	
Address		Facsimile No. ()	
Good Produced		Tariff Classification 	
Period Covered			
A. Transaction Value of the Good CARRIED FORWARD FROM — Transaction Value of the Good Page _____ (A) TRANSACTION VALUE OF THE GOOD			
B. Value of Materials CARRIED FORWARD FROM — Value of Materials Page _____ (B) TOTAL VALUE OF MATERIALS		Originating (1)	Non-Originating (2)
		Origin Unknown (3)	
C. Transaction Value of the Good Minus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VNM) TOTAL TRANSACTION VALUE OF THE GOOD MINUS VNM: (A - B(2) - B(3)) (C)			
D. Regional Value Content REGIONAL VALUE CONTENT: (C ÷ A x 100) (D) %			
E. Certification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all records and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 representations made in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			
Title (print or type)		Place (print or type)	
Telephone No. ()		Facsimile No. ()	
Authorized Signature		Name (print or type)	Date (YYYY/MM/DD)
B229 E (01) Printed in Canada			

①번에서 산정한 거래가격(A)와 ②에서 파악된 재료비 내역(B)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한다. 거래가격(A)에서 비원산지재료비(B2,B3)를 차감한 금액(C)를 다시 거래가격(A)로 나누어 이를 최종적으로 백분율 (D)로 나타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캐나다 거래가격에 의한 부가가치기준 원산지검증 질문서에서는 일반적인 공제법의 산정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순원가법 부가가치기준 질문서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순원가법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앞서 <표17>에서 산정한 재료가치 금액(A)에 <표18>에서 구한 순원가 금액(B)을 합하여 총순원가를 구하며, 이 금액에 비원산지재료비를 차감하고(D) 다시 총순원가액으로 나누어(E) 부가가치율을 최종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제품가격에서 이윤 및 판매촉진비, 마케팅비 등의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순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은 별도로 없으며, <표18>에서 산정한 금액에 <표17> 재료비를 합산하여 순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협정문의 방식을 따른다면, 순원가 검증질문서에는 최종 제품가격에서 이윤을 제거하여 총비용을 산정하고, 총비용에서 각종 공제비용을 차례로 차감하여 순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재 항목도 총비용과 공제비용인 판매촉진비, 마케팅비, 미허용이자비용 등의 공제비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캐나다의 순원가 질문서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부터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캐나다 원산지검증 매뉴얼 사례

동 교육내용 중에는 캐나다로 수입된 미국산 골프차량에 대하여 순원가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원산지를 판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목적용으로 제작한 가상의 사례이지만 미국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 경험이 풍부한 강사의 이력을 감안한다면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해당 사례는 캐나다 원산지검증 질문서(순원가법 적용)와 단가, HS 코드, 원산지,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가 기재된 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 ;BOM)로 구성되어 있다. 재료명세서는 540여개의 부품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부품은 하위 5단계부터 상위 1단계로 분류되어 있고, 1단위 부품 단위로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가 산정되어 있다. 그 내역을 합산하여 요약하면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제조원가 내역⁴⁾

재료비					재료비 총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역내산			역외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제3국	미상			
1,133.803	-	84.713	528.977	18.540	1,766.033	76.339	8.984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재료명세서(BOM)에는 모든 재료의 구매가격 뿐만 아니라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가 기재되어 있는 제조원가명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환관비 등과 같은 기간비용과 이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순원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4) Raymond Thibeault(2010). 「국제원산지검증 전문가 양성 특별 워크숍(2010.8.23-25) 강의자료」. 성남:국제원산지정보원, pp. 144-152.

〈표21〉 검증사례 재료내역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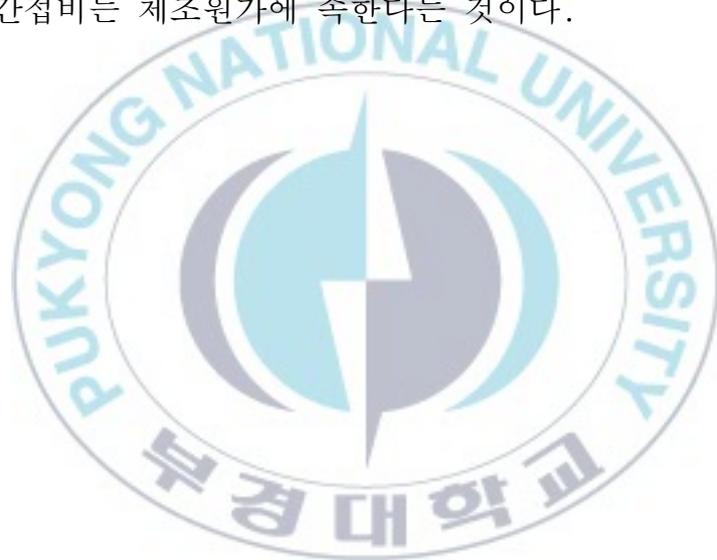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Agence des douanes et du revenu du Canada		(SECTION A) PROTECTED (when completed)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REGIONAL VALUE CONTENT — NET COST METHOD VALUE OF MATERIALS				Page _____ of _____		
Name of Producer <i>Galazie-Rider Corporation</i>				Telephone No. <i>(556) 741-9999</i>		
Address <i>100 Easy Goes Drive, Ridgecrest, CA, 90210</i>				Facsimile No. <i>(556) 742-9999</i>		
Good Produced <i>Golf Carts Model G14E</i>				Tariff Classification <i>8703110910</i>		
Period Covered <i>April 1, 2009 to March 31, 2010</i>						
Material Name	Tariff Classification of Non-Originating Materials and Materials of Unknown Origin	Supplier Name and Address	Unit Value of Materials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Satisfied
			Originating	Non-Originating	Origin Unknown	
CARRIED FORWARD FROM — Value of Materials Page _____						
		<i>See attached Bill of Materials (BOM)</i>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BOM contains Intermediate Materials - Hi speed motor Part # JH 7- # 1890-18 Cost 163</i>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Material Component — Carried forward to:			TOTAL VALUE OF MATERIALS (A) ▶			
<input type="checkbox"/> Summary <input type="checkbox"/> Value of Materials Page _____						
B228 E (01) Printed in Canada						

5) Raymond Thibeault(2010). 「국제원산지검증 전문가 양성 특별 워크숍(2010.8.23-25) 강의자료」. 성남:국제원산지정보원, p. 139.

<표21>은 순원가 질문서의 첫 번째 페이지로 재료내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상단에는 가상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품명, HS코드, 검증 대상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 기재항목에는 기재공간이 부족하여 별도 작성된 BOM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표20>과 같다.



<표22>에서는 제품의 순원가(Net Cost of the Good)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이 사례에서는 Major Cost Category란에는 Labor and Overhead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는 USA(미국)이고, Unit Cost란은 \$85.323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회사는 순원가를 구성하는 카테고리는 노무비와 제조간접비이며, 그 비용은 \$85.323라고 기재하였다. 그럼 앞서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앞서 소개한 <표20>의 원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s)에 기재된 재료비 및 기타 비용내역과 대조해 보면 질문서에 기재된 \$85.323이라는 금액은 <표20>에서의 노무비 \$76.339과 제조간접비 \$8.984의 합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순원가 카테고리로 제시된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제조원가에 속한다는 것이다.



〈표23〉 검증사례 순원가 부가가치를 산정7)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Agence des douanes et du revenu du Canada		(SECTION A) PROTECTED (when completed)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REGIONAL VALUE CONTENT — NET COST METHOD SUMMARY					
Name of Producer <i>Palazie-Rider Corporation</i>		Telephone No. <i>(556) 741-9999</i>			
Address <i>100 Easy Rock Drive, Redding, CA 96210</i>		Facsimile No. <i>(556) 742-9999</i>			
Good Produced <i>Golf Carts G-14E</i>		Tariff Classification <i>870310910</i>			
Period Covered <i>April 1, 2009 to March 31, 2010</i>					
A. Value of Materials		Originating (1)	Non-Originating (2)	Origin Unknown (3)	Aggregate (1) + (2) + (3) (4)
CARRIED FORWARD FROM — Value of Materials Page _____					
TOTAL VALUE OF MATERIALS		(A) <i>\$ 1218.516</i>	<i>528.977</i>	<i>18.54</i>	<i>1,766.033</i>
B. Net Cost of the Good					
CARRIED FORWARD FROM — Net Cost of the Good Page _____					
NET COST OF THE GOOD		(B) <i>85.323</i>			
C. Total Net Cost of the Good					
TOTAL NET COST OF THE GOOD: (A + B)		(C) <i>1851.356</i>			
D. Total Net Cost of the Good Minus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VNM)					
TOTAL NET COST OF THE GOOD MINUS VNM : (C - A2 - A3)		(D) <i>1303.839</i>			
E. Regional Value Content					
REGIONAL VALUE CONTENT: (D ÷ C X 100)		(E) <i>70.43%</i>			
F. Certification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all records and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 representations made in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					
Title (print or type) <i>Secretary-treasurer</i>		Place (print or type) <i>Palazie-Rider Corporation</i>			
Telephone No. ()		Facsimile No. ()			
Authorized Signature 		Name (print or type) <i>John Cant</i>		Date <i>June 1, 2010</i>	
B228 E (01) Printed in Canada					

7) Raymond Thibeault(2010). 「국제원산지검증 전문가 양성 특별 워크숍(2010.8.23-25) 강의자료」. 성남:국제원산지정보원, p. 141.

<표23>에서는 지금까지 파악한 각 비용들을 이용하여 순원가법으로 부가가치율을 산정하고 있다. 앞의 재료명세서 비용내역 <표20>와 대조하여 어떤 금액을 이곳에 기입하였는지 확인해 보겠다.

위 질문서 A(1) Originating (원산지재료비) 1218.516는 <표20>에서의 재료비 내역 중 미국산 재료비 1,133.803과 멕시코산 재료비 84.713의 합이다. A(2) Non-Originating (비원산지재료비) 528.977은 <표20>의 제3국 재료비 금액이며, A(3) Origin Unknown(원산지 미상 재료비) 18.54는 <표20>의 원산지 미상 재료비임을 확인할 수 있다. B. Net Cost of the Good 85.323은 앞서 <표21> 노무비와 제조간접비의 합으로 구한 값을 알 수 있다. A(4)의 재료비 총계 1766.033과 B 순원가 85.323을 합산하여 C. Total Net Cost of the Good 1,851.356을 구한다. 그리고 C에서 A2(비원산지재료비)와 A3(원산지 미상 재료비)를 차감하여 D 값을 구하고 D값을 다시 C로 나누고 백분율로 표시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율 E 값 70.43%를 산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질문서와 캐나다 세관 교육자료 예시에서 본 바와 같이 재료비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질문서에서의 Net Cost) 순원가(질문서에서의 Total Net Cost)를 산정하고 있다. 우선 한-미 FTA 및 NAFTA 협정문에서 제시한 순원가의 산정 방식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정문에서 제시한 방법대로라면 제품가격에서 이윤이 차감된 총비용을 계산하고, 총비용에서 공제비용들을 각각 차감하여 순원가를 계산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원가 질문서에도 총비용과 공제비용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캐나다 검증사례와 그 산정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 진다. 즉 제품가격, 총비용, 공제항목, 순원가로 이어지는 차감과정이 아니고, 재료비에 일정 금액을 더하는 가산과정이며, 그 가산된 원가 항목을 살펴보면 노무비(Labor Cost)와 제조간접비(Overhead Cost)만이 가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비용을 재료비와 함께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협정문에서 열거된 공제비용인 판촉·마케팅·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지만, 위 예시에서는 차감대상인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순원가 구성에서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제비용을 차감할 대상을 사전에 제거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의 순원가는 제조원가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B세관의 미국 A社 검증 사례 분석

B세관이 2013년 미국 A社에 대하여 실시한 원산지검증 사례를 통해 순원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A社は 승용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미국에 자동차 및 부품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C社가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하고 있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고, 수입자 C社は 미국 A社로부터 미국산 자동차 A모델을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였다. 이에 B세관은 2013년 1월부터 수입자인 C社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대상을 수출자로 확장하여 동년 6월부터 9월까지 미국 A社 및 그 협력사 5기업에 대하여 국제서면검증을 실시하였고, 동년 12월에는 A社 및 그 협력사 한 곳에 대하여 미국을 방문하여 원산지현지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대상 제품인 자동차 D모델은 미국 A社 현지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며, 품목분류(HS코드)는 6단위 기준으로 8703.23으로 분류된다. 8703.23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이며, 공제법 55%, 집적법 35%, 순원가법 35%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미국 A社は 순원가법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B세관에서는 순원가법을 이용한 부가가치 계산내역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다. B세관은 그 외에도 미국 A社에 대하여 원산지검증 질문서, 재료

명세서(BOM), 제조원가내역(Details of Cost), 설비보유현황,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매뉴얼, 제조공정도, 완제품수불부(Production and Release Data), 재무제표, 제품 매출전표(AR Journal), 표준원가정책 매뉴얼(Standard Costing Policy), 실제원가 산정자료(Reconciliation Report), 주요 부품의 매입전표(AP Journal), 송장(Invoice), ERP 캡처화면(ERP Screen Shot), 미국 세관 수입신고서(Entry Summary Report), 부품 수불부(Material Stock Report and Picking List) 등을 요청하였다. B세관의 요청에 대하여 미국 A社は 대부분의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으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순원가의 산정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검증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A社の 순원가법 산정방법을 살펴보겠다.

A社は 순원가 35%를 원산지기준으로 선택하였고, 월별로 검증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 제조원가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재료명세서에는 부품명, 부품코드, 가격, 원산지, HS코드, 구매처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원가도 월별로 계산되었으며, 앞서 재료명세서의 재료비 외에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추가로 기재되었다. 제조원가명세서에 제시된 내역 중 20x2년 7월 내역은 아래 <표24>와 같으며, 특이한 점은 순원가가 이 단계에서 이미 산정되었다는 것이다.

〈표24〉 미국A社 순원가 산정내역

month	Category		Cost
July	Materials (직접재료비)	Originating	0,000
		Non-Originating (Including Origin Unknown)	0,000
		Total	00,000
	Labor & Overhead cost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	Direct Labor	000
		Processing Cost	000
		Depreciation	000
		Indirect Labor & Tax	000
	Net cost		00,000

위 직접재료비는 재료명세서의 금액을 원산지와 비원산지로 구분하여 총계를 산정한 값이다. 그 외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는 Direct Labor, Processing Cost, Depreciation, Indirect Labor and Tax로 구성되었다. 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는 표준원가를 사용하여 모든 월의 값이 같았으며, 익년 회계결산 및 원가재분배과정(Reconciliation) 후 새롭게 산정되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순원가가 이 단계에서 이미 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표는 제조원가만 나열하고 있으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기간비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우선 미국 A社가 산정한 순원가와 한-미 FTA 협정문 순원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표25〉 판매가격의 구성 및 순원가⁸⁾

			판매이익		판매가격 (FOB)
			판촉	마케팅	
			운송	비허용이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②		
제조 간접비				총비용 ^①	
직접 경비	직접비	제조원가 ^③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총비용에서 공제비용을 차감하여 순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협정문을 살펴보면 총비용은 제품 가격에서 이윤을 제외한 제조원가와 기간비용을 합한 금액이고, 공제비용은 판촉·마케팅·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 비용로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조원가와 관련이 없는 기간비용이다. 그러면 총비용에서 공제비용이 차감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해진다. <표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제비용들은 제조원가와 관련이 없고, 모두 기간비용인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속한 금액으로서 ② 공간에서 차감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② 공간)에서 공제비용들을 차감하고 남은 비용(빗금친 부분)과 제조원가(③ 공간)의 합이 순원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 A社가 제시한 <표24>에 있는 재료비, Direct Labor, Processing Cost, Depreciation, Indirect Labor & Tax 모두는 제조원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비용들로 구성되었음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의 합계액이 순원가

8) 정준수(2004). 「원가·관리회계」, 서울:경문사, p.51.

라고 제시하고 있다.

앞서 협정문 규정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순원가는 제조원가(③ 공간)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중 일부 금액(②번 공간 중 빗금친 부분)의 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미국 A社は 판매비(② 공간)을 모두 포기하고, 제조원가(③ 공간)만을 순원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순원가에서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공제비용을 차감하는 대상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B세관에서 미국 A社에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제비용(관측·마케팅·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없었다. 그리하여 B세관은 순원가라고 신고된 제조원가의 세부 비용내역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관점은 앞서 <표5>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순원가의 구성 비용이 과대계상되어 부가가치비율이 부당하게 과대계상되지 않았는지 여부였다. 그리고 앞서 <표24> 비용 중 재료비만 실제원가이고, 나머지는 표준원가로 산정되어 회계결산 및 비용재분배(Reconciliation) 과정 이후 비용 변동에 대한 적정성도 검증하였다. 원산지 검증기간 동안 미국 A社は 순원가내역과 함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의 내부 원가자료를 모두 공개하였고, 순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어떤 원가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국 A社は 제조원가만을 가지고 순원가를 산정하였으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기에 공제비용을 인식하고 차감할 필요가 없었다. 미국 A社は 이렇게 산정된 순원가로 순원가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율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미국 A社가 적용한 순원가법은 앞서 한-미 FTA 협정문 규정을 바탕으로 추정된 순원가 산정방법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협정문 규정에 의하면 제품가격에서 이윤을 차감하여 총비용을 산정하고, 공제비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총비용에서 다시 차감하여 순원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관련된 비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만 순원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A社は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전체를 포기하고 제조원가만으로 순원가를 산정함에 따라, 차감할 대상이 원천적으로 없어졌으며, 차감할 비용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도 없어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타세관에서도 순원가법을 사용하는 미국 자동차기업 E社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진행중이었으며, 사실확인 결과 E社도 A社와 동일하게 제조원가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순원가를 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절 미국 관계자 인터뷰 내용

미국 A社 및 협력사에 대한 현지검증과정에서 A社 검증담당자, 미국 회계법인 직원(Pricewaterhouse Coopers, 전직 세관직원), 무역 자문회사 직원(Sandlers and Travis)과 만나 검증과 직접 관련된 사안 외에도 순원가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인터뷰하였다. 검증이 종결된 이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방문하여 순원가법에 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캐나다 회계법인 직원(Samson and Associates, 전직 캐나다 세관직원)에 대해서도 이메일을 통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순원가법의 도입 배경, 이유, 장점, 실무적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1) 순원가법의 도입 배경

NAFTA 이전인 1989년 미국과 캐나다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서 제품가격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상당한 혼선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자동차기업은 부가가치기준을 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 및 캐나다 관세당국과 자동차기업들은 제품가격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혼란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NAFTA 협상 당시에는 정확하고 안정적인 원산지판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게 되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제품가격보다는 원가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관세당국과 협상가들은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동차제품에 대하여 순원가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2) 순원가법의 도입 이유 및 장점

제품의 거래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가격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런 연유로 인해 태생적으로 변동성이 높을 여지가 많다. 이는 마케팅전략, 이전

가격정책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품가격이 수시로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세가격의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관세당국이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제품가격을 과대계상하면 원산지판정의 근거인 부가가치율도 높아지는 부가가치기준의 특성(유리한 상황도출)으로 인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관세당국은 이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확인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은 가격산정의 어려움과 방대한 업무량으로 인해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가격 대신 원가를 사용한다면 기업측에서는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그 적정성과 관련한 입증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기업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의거 원가를 산정하고, 그 내용은 외부인에 의한 재무감사를 통해 검증을 받으므로 제품가격보다 신뢰성이 높으며 관세당국에서의 수용성도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3) 실무적 사용방법

일부 자동차기업은 생산을 위탁받아 생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판매가격 자체를 순원가로 인식한다. 그 이외에 일반적으로 판매 및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기업은 제조원가로 순원가를 산정하고, 관관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제품하자비용(Warranty) 등과 같은 경우 관관비임에도 제조과정에서의 귀책사유로 보아 제조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순원가에 산입되면 안되므로 추가로 공제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캐나다간의 FTA에서 제품가격 정의의 모호함과 그로 인한 분쟁 등의 시행착오로 인해 순원가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NA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가 및 관세당국이 독자적으로 순원가법을 도입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각 국가의 자동차 업계에서 먼저 순원가법의 도입을 건의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FTA로 인한

특혜보다,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사업상의 위험요인으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자동차 업계가 순원가의 도입을 건의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 및 자동차기업은 한-미 FTA 협상 당시에 순원가법을 난해하고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여 도입을 반대하였으며, 발효 이후에도 순원가법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NAFTA 협상 당시에 순원가법을 먼저 건의하였다는 사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4장 순원가법의 효용성 분석 및 우리나라 자동차기업 활용방안

제1절 순원가법의 단순함과 적용 용이성

앞의 여러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자동차 기업은 제조원가를 이용하여 순원가를 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미 FTA 협정문에 근거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예상한 순원가의 산정방식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당초 순원가법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불식시키고 있다.

첫째로 산정과정 자체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간단하다는 사실이다. 순원가는 제품가격의 구성항목 중 제조원가에서 산정하므로 제품가격과 이윤 및 공제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가장 큰 난관으로 예상된 부분이었던 개별제품의 이윤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 공제항목을 찾아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로 정보유출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순원가 산정과정에서 이윤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내역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원산지검증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기업에서는 마케팅, 로열티 등 기업이 민감해 하는 비용이 속해 있는 판매비의 상세내역 검증 과정에서 상대국에 노출되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위 검증에서의 사례와 관련자의 진술로 순원가의 산정방법을 이와 같이 일반화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방법은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라는 데 있다. <표5>에서 보았듯이 순원가법 산식은 분모값인 순원가가 커질수록 그 결

과값인 부가가치비율도 높아져 원산지판정이 유리하게 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럼에도 기업이 순원가를 구성하는 이윤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모두를 포기 한다면 결국 순원가가 작아져 부가가치비율도 낮아져 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기업에서 이렇게 유리한 부분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면, 이를 검증하는 관세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윤 및 공제과정을 차감하여 순원가를 산정하도록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조원가를 사용하는 방법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미 협정문 제6.22조 상품의 순원가 산정방법 다항에서는 공제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합산하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업측에서 이 비용들을 합리적으로 할당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26〉 상품의 순원가 정의

영문	국문
<p>net cost of the good means the net cost that can be reasonably allocated to the good under one of the following methods:</p> <p>(a) calculating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all goods produced by that producer, subtracting any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and non-allowable interest costs that are included in the total cost of all such goods, and then reasonably allocating the</p>	<p>상품의 순원가라 함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 될 수 있는 순원가를 말한다.</p> <p>가.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그러한 모든 상품의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마케팅·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후, 이렇게 도출된 그러한 상품들의 순원가를 그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한 것</p>

<p>resulting net cost of those goods to the good;</p> <p>(b) calculating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all goods produced by that producer, reasonably allocating the total cost to the good, and then subtracting any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and non-allowable interest costs that are included in the portion of the total cost allocated to the good; or</p> <p>(c) <u>reasonably allocating each cost that forms part of the total cost incurred with respect to the good so that the aggregate of these costs does not include any sales promotion, marketing, and after-sales service costs, royalties, shipping and packing costs, and non-allowable interest costs,</u></p>	<p>나.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그 상품에 총비용을 할당한 후, 그 상품에 할당된 총비용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마케팅·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것, 또는</p> <p>다. <u>그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의 부분을 구성하는 각 비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하여, 이러한 비용들의 총합이 판촉·마케팅·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포함하지 아니 하도록 한 것</u></p>
--	--

제2절 순원가법과 공제법과의 부가가치율 비교 분석

그러면 제조원가만으로 순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안정적이고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윤 및 판관비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순원가가 작아져 부가가치비율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A社가 적

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자동차기업이 순원가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유불리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한-미 FTA에서 자동차에 해당하는 HS코드 8701에서 8706까지의 원산지결정 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이며, 집적법 35%, 공제법 55%, 순원가법 35%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집적법은 업계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⁹⁾ 공제법과 순원가법을 가지고 자동차 업계의 원가구조를 반영하여 비교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공제법은 55%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순원가법은 35% 이상이 되면 충족하므로, 순원가법이 유리하게 보이지만 이는 공제법에서 사용되는 제품가격이 순원가보다 크므로 부가가치율이 높게 산정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자동차기업의 제품원가 및 수익구조를 반영하여 공제법과 순원가법의 차이를 분석한다면, 이 20%의 차이(공제법과 순원가법 차이)를 고려할 때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아래의 가정을 통해 이를 분석하고 살펴보겠다.

선취인도가격(FOB) 기준 제품가격은 고정값인 100원으로 가정하고, 순원가(여기서는 순원가는 제조원가와 동일하다고 가정함)를 변수 x , 비원산지재료비를 변수 y 로 가정하고, 공제법과 순원가법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구간을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산식을 이용하여 충족구간을 구하면 아래의 <표27>와 같다. 공제법에서는 비원산지재료비(y 값)이 45원 이하이면 충족하며, 순원가법에서는 비원산지재료비(y 값)이 $0.65x$ 이하이면 충족한다. 이를 <표28> 그래프로 나타내면, 공제법에서는 비원산지재료비는 45원을 최대값으로 가지며, $y=45$ 선 아래 부분이 충족구간이며, 순원가법에서는 일차함수 직선인 $y=0.65x$ 선 아래부분이 충족구간임을 알 수 있다. 두 직선이 만나는 점(B)의 좌표는 (69.2, 45)로 이 점은 공제법 55%도 충족할뿐 아니라 순원가법 35%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무차별점(indifference point)이자 두 방법의 분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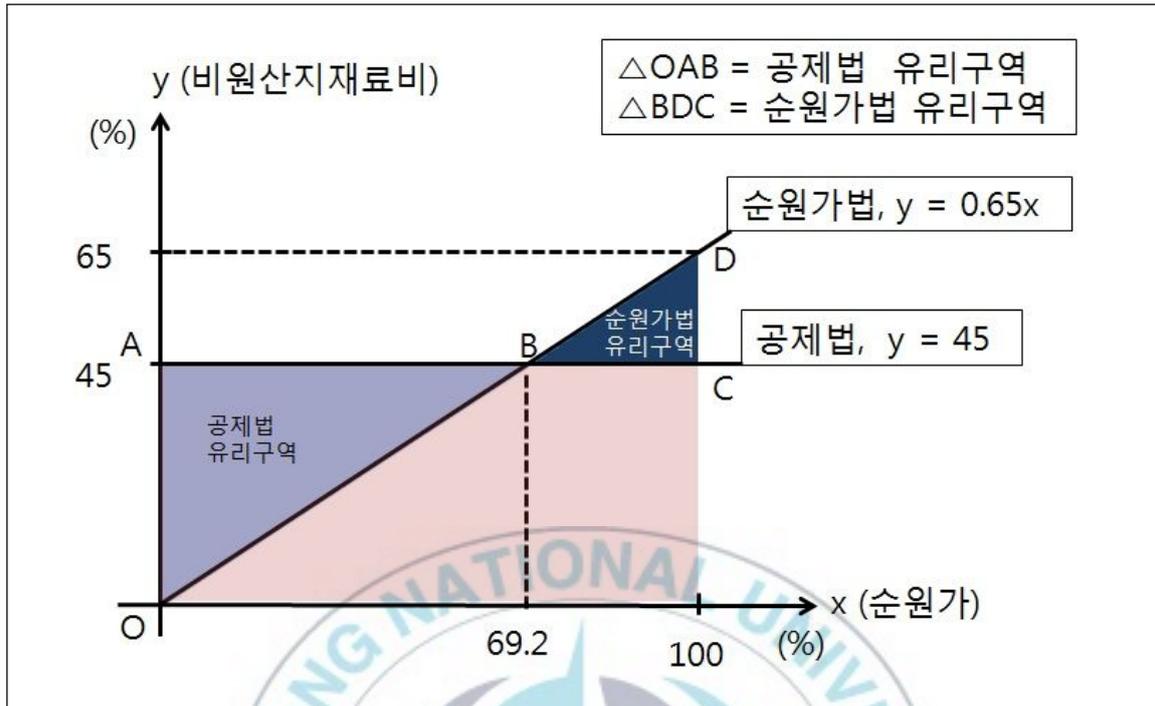
9) Jones, Vivian C. and Platzer, Michaela D.(2011). *The Proposed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 Automobile Rules of Origin.*

(break-even point)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y=45$ 직선과 $y=0.65x$ 직선이 만나는 점인 $x = 69.2$ 의 오른쪽 구간으로 짙은 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triangle BDC$)이다. 이 부분은 공제법에서는 충족구간이 아니지만 순원가법에서는 충족구간이다. 그리고 그 구간 내에서는 x 값이 69.2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커질수록) 두 직선간의 차이가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순원가법 적용시에 제품가격 대비 순원가 비중이 69.2% 보다 더 커지면 커질수록 비원산지재료비의 허용구간이 공제법보다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원산지재료를 공제법 적용시보다 더 사용하더라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기업에서는 전체 재료비에서 협력사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재료내역의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비원산지재료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비원산지재료비의 허용구간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협력사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대상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B세관에서 검증한 A社의 사례로 두 방법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27> 부가가치기준 허용치 계산

○ 공제법	$\frac{100 - y}{100} \times 100 > 55 \quad \rightarrow \quad y < 45$		
○ 순원가법	$\frac{x - y}{x} \times 100 > 35 \quad \rightarrow \quad y < 0.65x$		

<표28> 부가가치기준 허용 구간 비교



B세관에서 조사한 미국 A社의 검증제품의 경우 제품가격 대비 순원가의 비중은 92%로서 제품가격이 100원일 때 순원가는 92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비원산지재료비 값을 계산해 보면 Y_A 값이 59.8임을 <표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표6>에서 확인하였듯이 비원산지재료비는 작아질수록 부가가치율로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이 상황에서도 비원산지재료비가 59.8원 이하이면 순원가법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공제법에서 비원산지재료비의 최대 허용치인 45원 보다 큰 값이다. 공제법에서는 제품가격 대비 비원산지재료비를 45원 이하로 유지해야만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지만, 순원가법에서는 제품가격대비 비원산지재료비가 59.8원 이하이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상황에서 순원가법을 사용한다면 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 비원산지재료비 구간이 45원에서 59.8원으로 14.8원 만큼 비원산지재료비 구간이 확대되는 것이며, A社는 그만

큼 협력사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이다.

〈표29〉 A社の 비원산지재료비 허용치 계산

$\text{부가가치율} = \frac{92 - Y_A}{92} \times 100 > 35\%$
$Y_A < 59.8$

앞서 미국 여러 업체의 사례 및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실무에서는 제조원가를 순원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경우 정확한 원가자료를 입수할 수는 없었지만, 2012년도에 공시된 포괄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제품가격에서 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할 수 있었다. 즉 제품가격은 매출액으로 간주하고 순원가(제조원가)는 매출원가로 간주하여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구한 결과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은 모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비중이 70%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8>에서 공제법과 순원가법의 비원산지재료비의 허용구간이 역전되는 69.8을 모두 상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국 순원가법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30〉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순원가(매출원가/매출액) 추정 비율¹⁰⁾

기업	현대	기아	르노	지엠
순원가 추정비율	76%	79%	95%	95%

지금까지 제조원가를 순원가로 간주하여 공제법과 순원가법의 효익을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 현재 미국 A社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기업도 순원

10) 2012년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한 것임.

가법이 공제법보다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원산지결정 기준에서 공제법에 비해 순원가법에 유리하게 규정된 부가가치율 20%로 인한 효익이 이윤 및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모두 포기하고 순원가를 산정한 손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측은 한국 자동차기업이 사용하지 못하고, 자국 기업만 사용하는 순원가법에 대해 보다 관대한 부가가치율을 주장하였고 이를 관철하였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B세관의 원산지검증으로 미국 자동차기업이 실제로 사용하는 순원가법의 산정방법이 확인된 이상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이 순원가법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제3절 순원가법의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수출입거래에서 제품의 가격은 거래 당시의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마케팅 정책, 이전가격 및 가격협상 등 여러 가지 가격의 변동 요인이 있다. 이렇게 가격의 변동성이 높으면 관세당국은 제품가격의 적정성에 상당한 의심을 하게 되며, 과세가격 산정을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고, 기업은 과세가격의 산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정확한 관세가격의 산정을 위해서는 이전가격, 로열티, 선급금, 사후지급 비용, 리베이트, 제품품질 보증비용 등 제품의 관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내역을 검토해야 하는 까다롭고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다.

앞서 <표5>에서 공제법 구조의 부가가치율 산정방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품가격(산정가격)을 과대계상하면 부가가치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품가격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수출자가 악의적으로 가격을 부풀려 부가가치비율을 높게 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제조원가를 근거로 산정한 순원가는 이러한 조작의 여지가 극히 적

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제품의 원가는 그 구성요소가 재료비, 노무비 등 제조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요소들로 한정되어 변동 가능성이 적으며, 판매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이 가장 정확하게 산정할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다,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므로 정확하며 조작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겠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한-미 FTA가 발효되고 2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은 아직 순원가법에 대하여 실질적인 접근을 할 수 없었으며, 난해하고 정보유출 우려도 높은 것으로 인식하여 실무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B세관에서 미국 자동차기업에 대하여 실시한 원산지검증은 순원가법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검증으로 순원가법의 적용이 예상보다 간단하며, 정보유출의 우려도 적으며 객관성도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원가구조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공제법보다 부가가치율 산정에서 더 유리하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당초 우려와는 달리 우리나라 자동차기업도 순원가법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제품가격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가 엄격한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서 순원가법은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2016년부터 미국에서 한-미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어 미

국에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 2.5%가 면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에게는 관세면제가 가격경쟁력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지만, 이로 인하여 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냉장고,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큰 타격을 입혔던 미국정부의 이력을 감안한다면, 그보다 규모가 큰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그 수단으로는 협정에 합법적으로 규정된 원산지검증이 유력하다. 그 밖에도 2014년 3월 11일에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와도 FTA가 타결되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기준도 미국과 유사하게 순원가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캐나다에서 FTA발효 시점으로부터 2년안에 모든 관세가 철폐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 B세관에서 미국의 자동차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검증을 계기로 순원가법에 대하여 규정의 틀에서 벗어난 실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에 순원가법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이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캐 FTA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혜택을 위한 도구로써 순원가법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순원가법의 효용성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제조원가를 제품 개별로 확인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려웠으며, 이에 차선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순원가법의 효용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은 순원가법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아 실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확인 할 수 없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 자동차는 2016년부터 관세

혜택이 시작되어 2015년 현재까지 미국세관이 우리나라산 자동차에 대하여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참고할 사례도 전무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요인들은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면한 한계였다.

하지만 연구기간 중인 2014년 12월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인 C社の 협조로 본 연구내용을 소개하고, 통관·재무·원가·구매 등 다양한 부서의 담당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C社は 제조원가 등 핵심적인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후 C社에서 이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한 자체 검토 결과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순원가법이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순원가법 적용결과 공제법 대비 효용성 더 크다고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외에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등 미국세관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사례가 다수 소개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자동차기업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동차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FTA의 원활한 활용을 통한 우리나라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등>

- 관세청(2010). 「FTA 원산지검증 매뉴얼」, 대전:관세청
- 관세청(2014). 「미국 A社 원산지검증결과 보고서 (비공개)」.대전:관세청
- 국제원산지정보원(2010). 「국제원산지검증기법연구」.성남:국제원산지정보원
- 김관우·백형관(2013). 「FTA 원산지실무완성」. 서울:도서출판 두남.
- 윤광운(2012). 「무역실무」. 서울:탑북스.
- 이영달(2013). 「원산지결정기준」. 성남:국제원산지정보원.
- 정준수(2004). 「월가·관리회계」. 서울:경문사.
- 캐나다 관세청 <http://www.cbsa.gc.ca/publications/forms-formulaires/b228-eng.pdf>.
- Jones, Vivian C. and Platzer, Michaela D.(2011). *The Proposed U.S.-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 Automobile Rules of Origin.*
- Raymond Thibeault(2010). 「국제원산지검증 전문가 양성 특별 워크숍(2010.8.23-25) 강의자료」. 성남: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논문>

- 강민규(2014). 「한·미 FTA 원산지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관우(2014). “한-미 FTA 순원가법의 실제적 분석과 한국 자동차 기업의 활용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15권 제호. pp. 81-98.
- 김순옥(2011). 「한국 FTA 부가가치 원산지결정기준의 효율적 적용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용태·정재완(2013).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14권 제2호. pp. 45-64.
- 김준환(2008). 「한-미 FTA원산지규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철구·최장우(2013). “원산지관리역량 및 FTA 활용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14권 제1호. pp. 73-88.
- 신민경(2012). 「FTA 원산지규정 활용을 통한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종민(2012). 「한국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비 방안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재완(2012). “FTA 이행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제13권 제4호. pp. 61-78.
- 주재협(2011).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세관절차 규정에 대한 비교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